

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0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" 방범원 " 직명을 " 지도원 "으로 기칭하며,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"53" 세에서 " 58 " 세로 하고,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는등의 방범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